
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정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8253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7. 27.

발의자 : 조정식 · 민홍철 · 임종성
정성호 · 박주민 · 이원욱
장병완 · 전현희 · 박정
윤관석 · 노웅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

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,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49조).

법률 제 호
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년 이하의 징역”을 “3년 이하의 징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9조(별 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<u>2년 이하의 징역</u>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~ 7. (생 략)</p>	<p>제49조(별 칙) ----- ----- <u>3년 이하의 징역</u>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